

#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

우 110-755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/전화 (02)734-5721~2 /전송 734-9347~8  
 사업지원부 과장 조규담 담당자 최병권

문서번호 수개 67400-245  
 시행일자 1998. 11. 25. (    년)

|     |     |        |      |
|-----|-----|--------|------|
| 취급  |     | 국무조정실장 | 국무총리 |
| 보존  | 년   |        |      |
| 부단장 | 유기석 | 김영우    | 최병권  |
| 부 장 | 조규담 | 기획심의관  | 김성진  |
| 과 장 | 조규담 |        |      |
| 기안  | 조규담 |        | 협조   |

받음 받는 곳 참조  
 참조

제목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  
 제 1998-3/ )



1.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 수립(국무총리 지시 제 1998-11호, '98. 5. 13)과 관련입니다.
2.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공급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1차적인 책무이며, 특히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입니다.
- 3: 정부는 지난 5. 13 국무총리특별지시에 따라 약 6개월동안 총리실,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5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역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 중지를 모아 『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』을 마련하였습니다.
4. 따라서, 환경부등 중앙행정기관과 5개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생명수를 지킨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난 11. 20일 물관리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심의·확정한 『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』을 차질없이 추진하므로써 오는 2005년까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반드시 1급수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.

5.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장은 내년 2월 20일까지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 유의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공동책임하에 모든 국민과 합심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바랍니다.

가. 과학적이고 실효성있는 실천계획 수립

○ 관계기관의 장은 내년 1월 20일까지 기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에 제출하고, 환경부는 월별(12~2월) 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국무조정실(수질개선기획단)에 보고하고 관계기관별 실천계획 종합보고서를 2월 20일까지 보고할 것

○ 기관별 실천계획은 과학적인 근거와 사실을 원칙을 토대로 수립하되, 한강수계 상수원의 1급수 달성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, 민간환경단체·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할 것.

○ 특히, 특별대책 발표이후 언론과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 대책을 강구할 것.

○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기간을 엄수하여 추진하고 과학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지정하므로써 지역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에 좌우되지 않도록 할 것.

○ 오염총량제 실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1급수 수질목표 달성을 위한 중·장기적인 과제이므로 2002년부터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.

- 특히,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,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한 지역에 우선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

- 아울러 원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오염총량제가 도입·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

나. 5대권역별 현안과제 및 수질관리대책

○ 한강수계 상수원의 5대권역별 주요 현안과제와 수질관리대책을 실천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할 것

○ 특히, 수질개선기획단은 대책수립과정에서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잠실권역과 임진강권역에 대하여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 15일까지 수질오염행위 근절방안 및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본대책의 실천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.

다. 수변구역 지정대상지역에 대한 사전관리

○ 건설교통부, 환경부 등 관계부서의 장은 내년 8월말 수변구역이 지정되기전까지의 기간중에 신규입지가 금지되는 오·폐수 배출시설이 수변구역지정 대상지역에 설치되지 않도록 허가·승인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'98. 12.10일까지 강구할 것

라. 홍보철저

○ 정부에서 아무리 훌륭한 대책을 수립하더라도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지 못하면 그러한 대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 전시민에게 특별대책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,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.

○ 상류의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것.

마. 심사평가 철저

○ 수질개선기획단은 2005년 1급수 달성시까지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·평가하고,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별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것.

○ 특히, 환경부는 투자재원이 국가와 지방, 상·하류지역간 공동분담의 정신에 따라 어렵게 마련되었음을 감안하여 철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국가예산과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

바. 불법집단행위 및 수질오염행위의 엄정조치

○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대책수립과정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의견개진을 하지 않고 다수의 물리력 행사에 의한 법질서 문란행위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.

○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·단속체계를 구축하고, 특히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차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.

사. 수도권 전시민의 물 지키기운동 철저

○ 가정, 학교, 언론, 정부 모두가 물을 아끼고 깨끗하게 쓰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교육 및 물절약 운동을 전개할 것

○ 특히, 보이스카웃, 걸스카웃 등 청소년 단체를 활용하는 등 초·중·고생에 대한 환경보전의식을 심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

6. 환경부장관은 『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(안)』에 이번 특별대책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, 전국적인 법으로서 금년 정기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,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토록 할 것

붙임 : 1. 『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』 1부.

2. 『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(안)(환경부) 1부. 끝

# 국 무 총 리

받는 곳 가(05·14·31·34·35·36·37·40·41·42·44·46·47·51·61)  
나(01·04·10·11·12)